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71호 2020. 6. 25.(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85호 구룡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1
- 사천시 고시 제194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4
- 사천시 고시 제218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7
- 사천시 고시 제22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24
- 사천시 고시 제23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25
- 사천시 고시 제23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26
- 사천시 고시 제2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27
- 사천시 고시 제233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고시 -----28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824호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5
- 사천시 공고 제830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1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사천시 고시 제2020-185호

구룡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구룡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3항 및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구룡마을 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500백만원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4. 주요 사업내용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 계			500.0	
기 초 생 활 기 반 확 충			359.00	
	도요마을 소공원조성	부지매입비, 토공, 야외화장실 소규모 무대, 파고라, 가벽, 앉음벽, 평의자, 종합안내판 가로등, 수목식재, 투수블럭포장 쇄석포장	257.0	
	도요마을 테마길 정비	교량설치, 구룡도요지 역사안내판, 방향안내판, 산책로포장, 콘크리트포장	102.0	
지 역 역 량 강 화			71.0	
	리더육성 교육	1식	14.0	
	마을해설사 육성	1식	3.0	
	도요마을 동아리 육성	1식	20.0	
	국내 선전지 견학	1식	20.0	
	도요마을스토리텔링	1식	14.0	
	구룡문화제 축제지원	1식	10.0	
부 대 비 용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60.0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9년~2021년(3년간)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					2,180.0							
1) 도요마을 소공원 조성					1,446.0							
1	사남	화전	1606-2	천	1,446	1,446	박**					
2) 도요마을 테마길 정비					734.0							
1	사남	화전		천			국토교통부					
2	사남	화전		천			국토교통부					
3	사남	화전		제			국토교통부					
4	사남	화전		제			경상남도					
5	사남	화전		제			경상남도					
6	사남	화전		제			경상남도					
7	사남	화전		제			경상남도					
8	사남	화전		제								

8. 관계 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사천시 고시 제2020-194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

사 천 시 장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927,592,310,109	709,444,298,292	218,148,011,817	143,420,376,794 (1,558,000,000)	10,438,974,595	64,288,660,428
일 반 회 계	842,579,930,097	663,593,286,617	178,986,643,480	128,694,221,804 (1,558,000,000)	7,068,536,715	43,223,884,961
특 별 회 계	85,012,380,012	45,851,011,675	39,161,368,337	14,726,154,990	3,370,437,880	21,064,775,467
공 기 업	소 계	39,602,734,557	32,516,120,223	7,086,614,334	2,159,690,370	4,926,923,964
	상수도 사업	20,899,214,078	18,791,385,823	2,107,828,255	1,114,895,470	992,932,785
	하수도 사업	18,703,520,479	13,724,734,400	4,978,786,079	1,044,794,900	3,933,991,179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금	순 세 계 금
소 계	45,409,645,455	13,334,891,452	32,074,754,003	12,566,464,620	3,370,437,880	16,137,851,503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6,095,010,672	1,840,392,440	4,254,618,232		3,362,164,560	892,453,672
의 료 급 여 기 금	2,847,836,642	2,732,574,652	115,261,990			115,261,990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자생 활 안 정 자 금	332,332,059	14,995,200	317,336,859			317,336,859
수 질 개 선 사 업	937,080,169	925,725,250	11,354,919		8,273,320	3,081,599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4,280,576,093	69,266,000	4,211,310,093	480,426,000		3,730,884,093
장 기 미 집 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 상	270,819,380	32,934,100	237,885,280			237,885,280
도 시 개 발	1,764,351,204	163,082,920	1,601,268,284			1,601,268,284
지 하 수 관 리	579,249,340	410,829,030	168,420,310			168,420,310
종포일반산업단지	1,044,394,420	205,025,820	839,368,600	244,974,180		594,394,420
농 공 단 지 사 업	18,180,513,032	6,261,689,540	11,918,823,492	11,841,064,440		77,759,052
중 소 기 업 육 성 기	2,868,154,944	142,076,500	2,726,078,444			2,726,078,444
농 어 업 발 전 기	6,209,327,500	536,300,000	5,673,027,500			5,673,027,500

2. 기금결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자활기금외 6종	6,002,000,548	△516,952,112	5,485,048,436

사 천 시 공 보

제 671 호

3. 채권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전소주변 외 4종	7,036,266,917	△311,647,940	6,724,618,977

4. 채무결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18,800,000,000	4,900,000,000	23,700,000,000
일반회계	600,000,000	△200,000,000	400,000,000
특별회계	18,200,000,000	5,100,000,000	23,300,000,000

5. 공유재산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공유재산	1,348,850,498,421	95,192,472,234	1,444,042,970,655

6. 물품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미니버스 외	15,945,698,000	△3,876,440,000	12,069,258,000

7. 재무제표

(단위 : 원)

재 정 상 태 표			재 정 운 영 표		
총 자산	총 부 채	순 자 산	총 비 용	총 수 익	재 정 운 영 결 과
3,017,945,346,677	64,691,596,349	2,953,253,750,328	524,045,596,224	682,143,784,765	△158,098,188,541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사천시 고시 제2020-218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8-251호(2018. 12. 13.)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사천시 사등동 산34번지 앞 공유수면 일원의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20. 6. 25.

사 천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향촌2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사천시 관내 해안주변에 산재되어있는 소형 수리조선소 등으로 인하여 도시주거환경 저해 및 기름 유출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소규모 영세 수리조선소 등을 한 장소로 집단화하여 경쟁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및 향후 사천 바다케이블카 운행 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함과 동시에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주변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산34번지 앞 공유수면 일원

나. 면 적

A=68,661㎡(산업단지 : 62,153㎡, 진입도로 : 6,50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기정) 2016. 7. 28. ~ 2020. 6. 30.

(변경) 2016. 7. 28. ~ 2020. 12. 31.(증6개월)

※ 변경사유 : 입주예정업체 입주 불확실성에 따라 서측호안 설계변경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유치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 폐수 발생시설 제외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나.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가. 지목별 현황 :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역으로 현재 지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나. 소유별 현황 :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역으로 현재 소유권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합계	68,661	100.0	
산업시설용지	44,273	64.5	
공공시설용지	22,835	33.2	
도로	12,448	18.1	
주차장	1,247	1.8	1개소
공원	1,456	2.1	1개소
완충녹지	351	0.5	
경관녹지	7,333	10.7	
기타시설용지	1,553	2.3	
녹지	1,553	2.3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 총괄표(변경없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775	12,448	-	-	-	1	775	12,448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775	12,448	-	-	-	1	775	12,448	-	-	-
소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26	15~18	집산 도로	775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 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247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3) 녹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333	사천시 고시 제2016-159 호 (16.07.28)	-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351	사천시 고시 제2016-159 호 (16.07.28)	-

4) 공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56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5) 상수도계획(변경없음)

○ 용수량

구 분	용 수 수 요 량 (㎡/일)	비 고
계	153	· 용강배수지에서 공급
생활용수	21	
공업용수	132	

6) 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오수량

구 분	오 수 량 (㎡/일)	비 고
계	134	·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생활오수량	15	
공업오수량	119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7)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전 력

구 분	전력소요 (MWh/년)	비 고
계	4,033	·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 열수요

구 분	연간 열부하 (Gcal/년)	비 고
계	3,437	· (주)지에스이와 협의하여 공급

9)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소요회선	비고
산업시설용지	22	· (주)KT에서 신규 통신시설 공급
여유율(20%)적용	25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27,400백만원)

(시비 및 지방채 발행 등) 사업시행자가 조달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비고
계	27,400	2,100	5,900	19,400	-
공사비	22,600	1,000	4,700	16,900	-
설계비	설계비	1,100	-	-	-
	감리비	1,200	-	1,200	-
기타비용	2,500	-	-	2,500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해당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11. 에너지 사용계획 : 해당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업 종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	44,273	100	-
C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4,273	100	폐수 발생시설 제외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68,661	100.0	-	
처분대상 용지	소 계	44,273	64.5	-
	산업시설용지	44,273	64.5	실수요자 분양
지자체 무상귀속 시설용지	소 계	22,835	33.2	
	도 로	12,448	18.1	사천시 귀속
	주 차 장	1,247	1.8	"
	공 원	1,456	2.1	"
	완 총 녹 지	351	0.5	"
	경 관 녹 지	7,333	10.7	"
기 타	녹 지	1,553	2.3	"

15.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1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 해당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1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I.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합 계		68,661	100.0	
도시 지역	일반공업지역	68,661	100.0	(99.8)
	자연녹지지역	-	0.0	(0.2)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775	12,448	-	-	-	1	775	12,448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775	12,448	-	-	-	1	775	12,448	-	-	-
소로	-	-	-	-	-	-	-	-	-	-	-	-

(2)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26	15~18	집산 도로	775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 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1,247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333	사천시 고시 제2016-159 호 (16.07.28)	-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일원	351	사천시 고시 제2016-159 호 (16.07.28)	-

나)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56	사천시 고시 제2016-159 호 (16.07.28)	-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6	향촌2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사등동 일원	68,661	2016.07.28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68,661	100.0	
산업시설용지	44,273	64.5	
공공시설용지	22,835	33.2	
도 로	12,448	18.1	
주 차 장	1,247	1.8	1개소
공 원	1,456	2.1	1개소
완 충 녹 지	351	0.5	
경 관 녹 지	7,333	10.7	
기타시설용지	1,553	2.3	
녹 지	1,553	2.3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7 - I -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계		44,273			44,273	
산업	산업1	44,273	1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1,116	
			2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7,642	
			3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6,445	
			4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9,070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계		1,247			1,247	
주	주1	1,247	-	사등동 일원	1,247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	산업 1-1~ 산업 1-4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배 치	· 건축배치지양구간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배치 지양(권고)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 채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강조색 (제한없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나)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 산업 1-1~ 산업 1-4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 시설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 채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6) 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1) 공원 조성계획 총괄표

시설의 구분	부지면적 (㎡)	건축면적(㎡)	구성비 (%)	비고
총 계	1,456	-	100.00	
공원세부시설	266	-	18.26	
도 로	96	-	6.59	
광 장	113	-	7.76	
운동시설	57	-	3.91	
녹 지	1,190	-	81.74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2) 세부시설 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공 원 면 적				1,456	-	-	-	
시 설 합 계				266	-	-	-	
도로	소 계			96	-	-	-	
	1-1	보행자도로1	사등동 산37번지	53	-	-	-	
	1-2	보행자도로2	사등동 산37번지	43	-	-	-	
광장	소 계			133	-	-	-	
	2	중 앙 광 장	사등동 산37번지	133	-	-	-	
운동 시설	소 계			57	-	-	-	
	3	체력단련시설	사등동 산37번지	57	-	-	2개	

(2) 녹지 조서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녹 지	소 계			1,190	-	-	-	
	4-1	녹지 1		685	-	-	-	
	4-2	녹지 2		505	-	-	-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작성되는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공간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구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규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지정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 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되어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1조(건축물의 용도)

- 산업시설용지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예시)에 의한다.
- 예시

구분	규제내용
산업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제2조(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이하	최고층수	250%이하	-
건폐율 이하	최저층수	60%이하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없음

제4조(차량의 대지 내 진·출입)

- ① 경관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 ③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차장)

-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제3장 기타 기반시설용지

제1조(주차장의 설치)

- ① 주차장 부지내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소공원의 설치)

- ① 소공원의 공원시설은 전체부지의 20%이하로 설치토록 한다.
- ② 소공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설치)

- ①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의 배치)

- 기반시설용지 부지에 당해 용도를 위한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접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기타 기반시설의 적용)

- 기타 기반시설용지의 적용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장 기타사항

제1조(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① 1개 공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 ②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에 따른다.

제2조(기타)

-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조(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절차를 따른다.
-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사천시 고시 제2020-22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06. 25.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20-7호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20년 06월 16일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방파제 및 부잔교 각1개소)
4. 점용·사용의 장소(공사장소)
 -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7번지선
5. 점용·사용의 면적 : 2,123㎡(직접 : 568, 간접 : 1,555)
6. 점용·사용의 기간 : 2020년 06월 16일 ~ 2035년 06월 15일(15년간)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로 77
8.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0-5호
 - 공사기간 : 2020. 06. ~ 2021. 04.
9.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0. 06. 18.
10.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사천시 고시 제 2020-23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06. 25.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20-8호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20년 06월 16일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방파제 및 부잔교 각1개소)
4. 점용·사용의 장소(공사장소)
 -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6-4번지선
5. 점용·사용의 면적 : 1,942㎡(직접 : 486, 간접 1,456)
6. 점용·사용의 기간 : 2020년 06월 16일 ~ 2035년 06월 15일(15년간)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로 77
8.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0-6호
 - 공사기간 : 2020. 06. ~ 2021. 04.
9.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0. 06. 18.
10.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사천시 고시 제2020-23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06. 25.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20-5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20년 6월 16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해상공사 사토 반·입출을 위한 물양장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2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2,946㎡(직접 762, 간접 : 2,184)
6. 점용·사용의 기간(변경)
 - 당초 : 2019. 05. 01. ~ 2020. 04. 30.
 - 변경 : 2020. 05. 01. ~ 2021. 04. 30.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주)대림산업개발 대표 김종진
 - 주 소 :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699-1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사천시 고시 제2020-2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06. 25.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20-6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20년 6월 16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물양장 설치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 방지(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2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1,156㎡(직접 50, 간접 : 1,106)
6. 점용·사용의 기간(변경)
 - 당초 : 2020. 04. 23. ~ 2020. 05. 31.
 - 변경 : 2020. 06. 01. ~ 2020. 07. 31.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주)상희토건
 - 주 소 :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82, 3층 303호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사천시 고시 제2020-233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6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같은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25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성 명	주 소	비고
사천시장(산업입지과)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 외 31필지
4. 사업부지현황(토지이용계획)

합계(m ²)	주거용지(m ²)	마을회관, 주차장(m ²)	도로(m ²)	구조물 및 사면	비고
19,097	10,707	1,000	4,957	2,433	단독주택 23세대

5. 사업시행기간 : 2020. 7. 24 ~ 2023. 7. 23

6.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과 의제(일괄)처리사항 등

- 가.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 나. 농지전용 협의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용당(항공MRO)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

1)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소로	5	776 (485)	7,284 (4,957)	4	478	4,897	1	298 (7)	2,387 (60)	-	-	-
신설	소로	3	326	3,393	3	326	3,393	-	-	-	-	-	-
변경	소로	2	450 (7)	3,891 (60)	1	152	1,504	1	298 (7)	2,387 (60)	-	-	-

※()연장은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1	97	10	국지 도로	188	소1-100	중2-2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1	98	10	국지 도로	58	소1-97	소1-99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1	99	10	국지 도로	80	소1-100	소1-9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450	중로1-7	중로-2-2	일반 도로	-	'74.08.26 경남74-73호	구역 외
변경	소로	2	6	8	국지 도로	298 (7)	중로1-7	소로1-100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1	100	10	국지 도로	152	소2-6	중2-2	일반 도로	-	-	

※()연장은 구역내 연장임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신설 - L=188m - B=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07번지 일원에 사천시 용당(항공MRO)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를 신설코자 함
-	소로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신설 - L=58m - B=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07번지 일원에 사천시 용당(항공MRO)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를 신설코자 함
-	소로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신설 - L=80m - B=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07번지 일원에 사천시 용당(항공MRO)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를 신설코자 함
소로2-6	소로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변경 - L=450m→298m(7) - B=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07번지 일원에 사천시 용당(항공MRO)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구역 내 도로폭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역내 8m구간(152m)을 소로1류로 변경함에 따라 노선변경코자 함
소로2-6	소로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변경 - L=152m - B=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로2-6호선의 일부구간 폭원을 2m 확보함에 따라 소로1류로 노선변경코자 함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수석공원	근린공원	사천읍 구암리 1598번지 일원	166,581	감) 5,386	161,195	건설부고시 제2882호 '66.10.18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석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감소 - A:166,581㎡→161,195㎡ (감 5,3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천 용당(항공MRO)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을 위해 근린공원을 일부 축소함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0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용당(항공MRO) 이주단지 내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노 선 명	도로결정내용	금회 시행분	면적	비고
합 계			6,715㎡	
소로1-97호선	L=188m, B=10m	L=188m, B=10m	1,951㎡	
소로1-98호선	L=58m, B=10m	L=58m, B=10m	614㎡	
소로1-99호선	L=80m, B=10m	L=80m, B=10m	828㎡	
소로1-100호선	L=152m B=10m	L=152m B=10m	3,32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산업입지과)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성 명	주 소	주소	성명	관리의내용	
1	사천읍 정의리	1	전	664	3	이*민	경북 영일군 오천읍 용덕리				
2	사천읍 정의리	3	전	1,729	20	김*호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김*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김**빈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이*길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3	사천읍 정의리	5-2	전	833	304	변*	사천읍 수석리				
4	사천읍 정의리	11	전	912	256	강*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전*선	사천읍 수석리				
5	사천읍 정의리	12	전	436	1	김*조	사남면 유천리				
6	사천읍 구암리	1347	전	1,366	204	권*태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남로				
7	사천읍 구암리	1361	전	1,947	829	박*민	진주시 명석면 외울길				
8	사천읍 구암리	1362	전	1,660	341	정*택	울산시 북구 강동산하5로				
						전*탁	울산시 중구 서동				
9	사천읍 구암리	1393	전	1,226	324	이*호	정의동				
10	사천읍 구암리	1394	전	1,871	373	이*선	진주시 칠암동				
						김*상	사천읍 평화리				
11	사천읍 구암리	1395	전	873	328	김*수	사천읍 사천읍성로				
						김*수	사천읍 정의1길				
12	사천읍 구암리	1396	전	1,157	89	윤*선	정동면 풍정리				
13	사천읍 정의리	1397	전	1,329	912	이*민	용현명 평기1길				
14	사천읍 구암리	1398	전	1,213	446	손*희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손*희	사천읍 옥산로				
						손*희	성남시 분당구 양행로				
15	사천읍 구암리	1400	전	1,382	580	고*식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김*정	전북 군산시 동매3길				

사 천 시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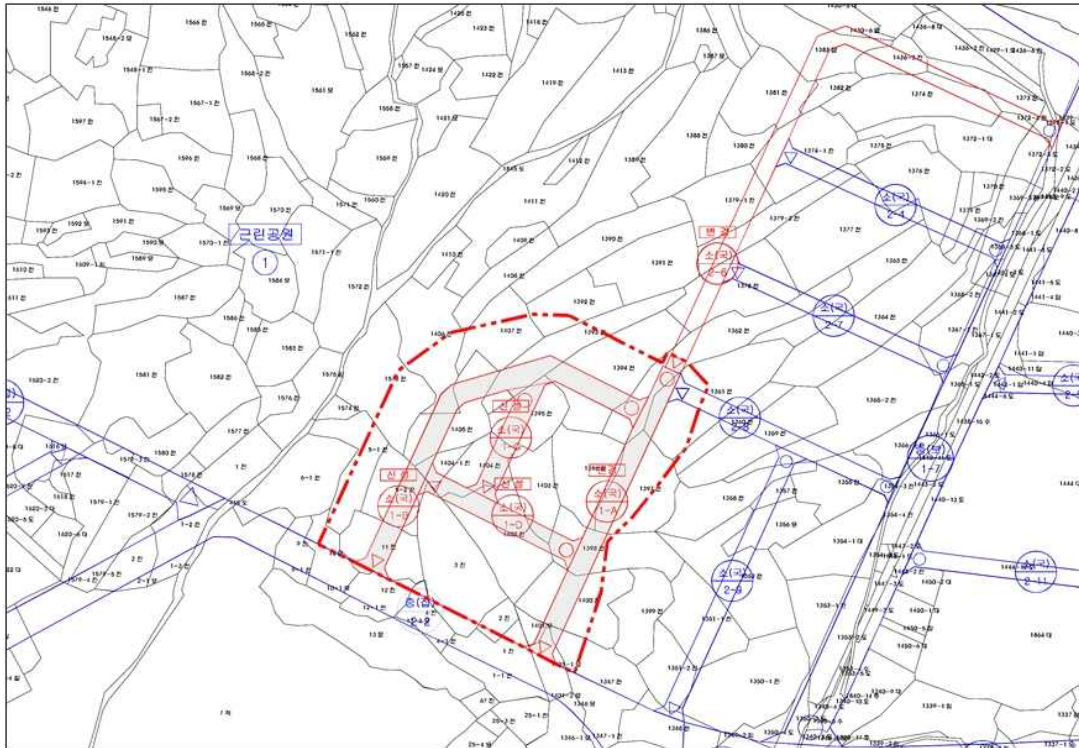
제 671 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성 명	주 소	주소	성명	관리의내용	
16	사천읍 구암리	1401	묘	141	28	김*명	정의동				
17	사천읍 구암리	1401-1	묘	376	138	김*명	정의동				
18	사천읍 구암리	1402	전	1524	483	조*종	두량리				
19	사천읍 구암리	1403	전	797	70	강*병	안양시 만악구 박달동				
20	사천읍 구암리	1404	전	679	334	장**랑	마산시 합성동				
						장*수	진해시 풍호동				
						장*길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21	사천읍 구암리	1404-1	전	230	102	장**랑	마산시 합성동				
						장*수	진해시 풍호동				
						장*길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22	사천읍 구암리	1405	전	1,088	439	사천시					
23	사천읍 구암리	1406	전	1,544	103	이*택	사천읍 평화리				
						최*민	평화동				
24	사천읍 구암리	1407	전	929	1	제*선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25	사천읍 구암리	1360	전	562	7	장*진	사천읍 평화리				
합계				26,468	6,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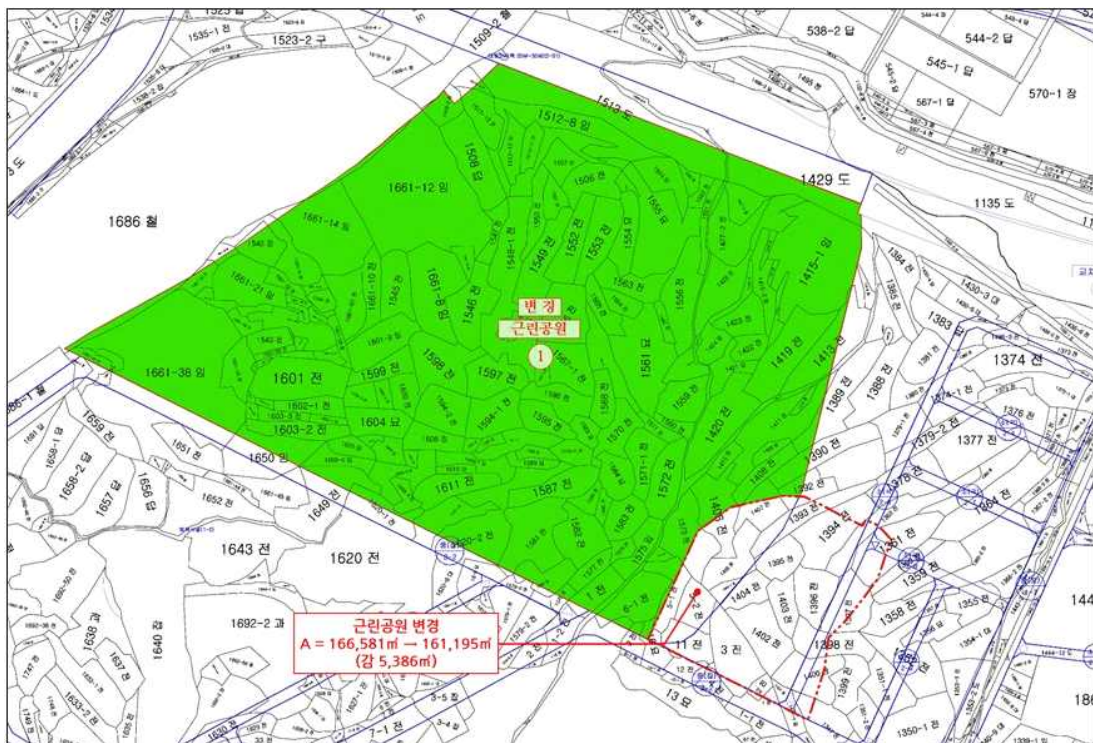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도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도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사천시 공고 제2020-824호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미반환 규정 삭제(안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15, FAX : 831-6013)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사용료의 반환) <u>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p>1. · 2. (생 략)</p>	<p>제13조(사용료의 반환)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71 호

사천시 공고 제2020-830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으로 한정된 지원절차를 삭제, 지원방법을 다양화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제4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을 (관광객 유치 지원)
- 나. 관광객 유치 지원 규정 정비 및 지원범위 확대(안 제4조)
- 다. 지원 절차 삭제(안 제5조)

사 천 시 공 보

제 671 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84, FAX : 831-6024)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 을 “(관광객 유치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조금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자(개인, 법인,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u>시장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p>1. ~ 11. (생략)</p> <p><u><신 설></u></p> <p><u>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u></p>	<p><u>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u> ----- -----</p> <p><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u><삭 제></u></p>

사 천 시 공 보

제671호

관 련 법 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